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6. 16 선고 2022가단522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5. 12.

판 결 선 고 2022. 6. 1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22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9. 10. 29. 접수 제22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이지혜

별지